

인천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가단9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9.경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투자하면 10배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C’라는 아이디를 가진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냈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계좌로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2021. 9. 21.부터 2021. 9. 22.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4,19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었음을 인지하고 2021. 9. 23. 인천연수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의 신고 사건은 광주북부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광주북부경찰서는 원고의 피해금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를 검거하여 수사한 후 원고의 신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합계 44,19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1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양도가 금지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전자금융사기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위 통장이 전자금융사기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위 피해금 44,19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 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성명불상자의 전자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021. 9. 21.과 2021. 9. 22.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합계 44,19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21. 9. 21. 입금된 830만 원은 약 14분 후 주식회사 E로 이체되었고, 다음 날인 2021. 9. 22. 입금된 1,100만 원 역시 약 12분 후에, 1,800만 원도 약 13분 후에, 689만 원도 약 3시간 30분 후에 각 주식회사 E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각 금액 상당 이득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피해금으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성명불상자의 전자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피해금 합계

44,190,000원을 송금하였고, 광주북부경찰서장이 피고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전자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한 시점 및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시점은 2021. 9.경인데 피고가 성명불상자에 제공한 이 사건 계좌가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021. 11.경으로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할 당시에는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피고가 알게 된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다른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범죄사실로만 처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한 후 그 이용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전자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할 때 이 사건 계좌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전자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이미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의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혜